

#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수)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

2014년 9월 10일(수)

### 4. 폐지근거

- 가. 「지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폐지 ('08.5.13)

## 5. 검토의견

0 1회용품 사용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 (2008.5.13.) 되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